

화성 함백산추모공원

주물 관받침대 제작 시방서

《 목 차 》

I. 일반 시방서	1
1. 목적	1
2. 물품납품	1
3. 검수	1
4. 하자보증	2
5. 기타사항	2
II. 제품 사양서	3
1. 물품규격	3
2. 자재	4
3. 제작	4
4. 검사	4
5. 기타	5

화성 함백산추모공원

일 반 시 방 서

1. 목 적

본 시방서는 화성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.)에서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관받침대를 구입함에 있어, “공사” 가 공급업체(이하 “공급처” 이라 한다.)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2. 물품납품

- 1) “공급처” 는 “공사” 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(운반비 등)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2) 제품의 운반시 “공급처” 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“공급처” 는 신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.
- 3) “공급처” 는 첫 납품에 한하여 주형 제작기간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“공사” 에게 납품하여야 한다.
- 4) “공급처” 의 납품기한은 “공사” 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- 5) “공급처” 는 “공사” 와의 계약 후, 시제품(2개)을 사전 납품하여 제품 품질을 “공사” 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, 감독관의 승인 후 납품한다.
- 6) 제품은 사양서와 일치하거나, 그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, 저급품 또는 화장을 견디지 못하는 현저한 기능저하가 발견될 시, “공사” 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공급처” 가 진다.
- 7) “공급처” 는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매물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계약 후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3. 검수

- 1) 제품규격의 확인은 사양서와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.

- 2) 제시한 사양에 미흡 할 시, 즉시 성능이 보장되는 신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.
- 3)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“공급처”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.
- 4) 대금지급은 “공사”의 요청에 의한 납품을 완료하고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“공급처”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5) 납품은 단가계약에 의한 분할납품 조건이며, “공사”의 특정 수량 납품 요청에 따라 해당 수량만큼의 대금을 분할 지급한다.
- 6) 대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카치세 포함으로 청구 및 지급하며, 기타 대금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“공사”와 “공급처”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- 7) 검수는 검수원의 입회하에 “공사”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완료 후 “공사”가 요구한 제품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“공급처”는 즉시 제품사양서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.

4. 하자보증

- 1) 물품 납품 후 물품의 결함에 의한 불량품에 대해서 “공급처”는 즉시 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.
- 2) 불량품이란 하중을 견디지 못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파손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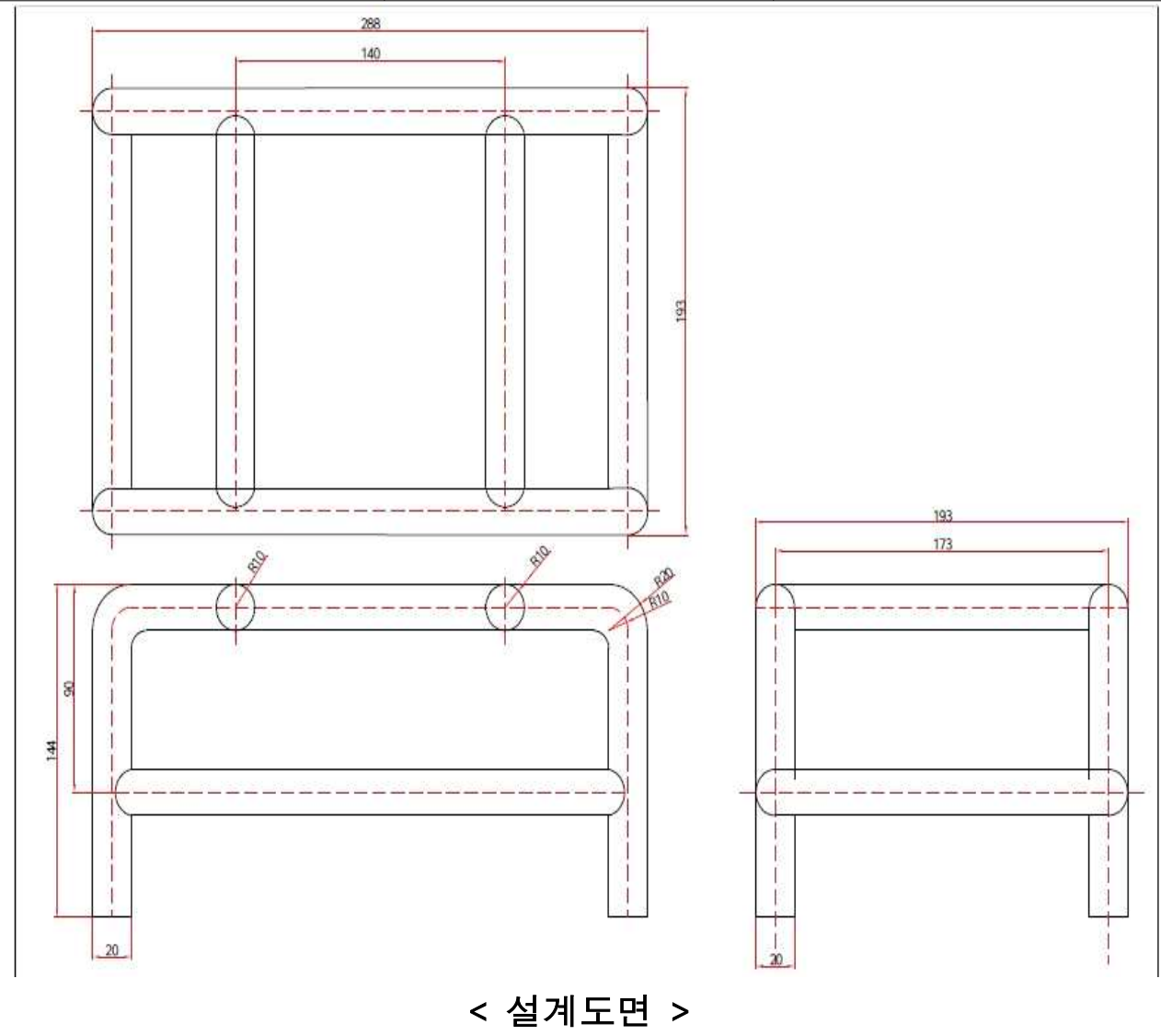
5. 기타사항

- 1) 본 시방서 및 제품사양서는 본 제품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.
- 2) 납품 완료한 후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기타 미비사항 또는 추가사항 등은 “공급처”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한다.
- 3) 기타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” (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, 2025. 7. 7., 일부개정)에 따른다.

제 품 사 양 서

1. 물품규격

구 분	세 부 사 양	비 고
사용재료	sus310	
제작방식	주물제작	
크기(길이*너비*높이)	288x193x144 (mm)	
온도	1000℃ 이상	
하 중	최대 200kg 하중 지지	하중(관+부장품+고인)
처리능력	1개당 화장 198회 이상	내구연한45일 기준
A/S	불량품 즉시교체	
납품기한	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	



2. 자 재(재료)

- 1) 강도, 내화성, 내구성 등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2) 재료 사용은 신품으로써 결함이 없어야 한다.
- 3) 기계적으로 과도한 하중에 의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3. 제 작

- 1) 관받침대는 주물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, 주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“공급처”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2) 관받침대는 연소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제작하여야 하며, 화장로 운전 중 내화성, 고온강도, 내마모성이 탁월하게 유지되어야 한다.
- 3) 관받침대 모서리부분은 최대한 곡면을 주어서 응력이 집중하지 않도록 제작한다.
- 4) 관받침대 주조표면은 균일하고 외관 및 절곡부, 이음새 등이 매끈하여야 한다. 또한 휨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5) 관받침대에는 일체의 용접, 가공등의 흔적이 없어야 하며 균열 및 기공이 없어야 한다. 또한 고온 고열에서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.

4. 검 사

- 1) 본구입에 사용되는 제품의 재질은 제품사양서와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한다.
- 2) 관받침대 제작 납품 시 “공급처”는 제작도면 및 제품사양서에 맞는지 “공사” 감독관에게 검사받아야 한다.
- 3) 정식 납품전, 사전에 시제품 2개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5. 기 타

- 1) 주물 관받침대의 제작에 필요한 형틀(목형, 금형 등)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틀의 제작은 “공급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2)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KS기준이 없을 때는 동일이상의 자재 및 기준을 적용해야한다.
- 3) 납품자는 납품후 기록사진을 촬영하고 납품완료시 납품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